

교직과정운영규정 신 · 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p>제정 1999. 3. 1. 개정 2001. 3. 1. 개정 2003. 3. 1. 개정 2003. 9. 1. 개정 2005. 10. 1. 개정 2006. 11. 1. 개정 2008. 12. 5. 개정 2012. 9. 1. 개정 2013. 3. 1. 개정 2016. 3. 1.</p>	<p>제정 1999. 3. 1. 개정 2001. 3. 1. 개정 2003. 3. 1. 개정 2003. 9. 1. 개정 2005. 10. 1. 개정 2006. 11. 1. 개정 2008. 12. 5. 개정 2012. 9. 1. 개정 2013. 3. 1. 개정 2016. 3. 1. 개정 2021. 7. 16.</p>	
<p>제 2조(교육목적 및 교육목표) 교양과 인격을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수한 중등교사 및 여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고 교육적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. 2. 전공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한 안목과 연구능력을 기른다. 3. 교육현장에서의 실무능력 및 미래사회 교육에의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른다. 	<p><u>제 2조(교육목적) 인성과 교육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미래형 교사양성</u> <개정 2021. 7. 16.></p> <p><u>제 2조의2(교육목표) 교직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개정 2021. 7. 16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MAUM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기른다.</u> 2. <u>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예비교사 역량을 강화한다.</u> 3. <u>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문지식의 적용, 활용, 융합이 가능한 현장실무능력을 기른다.</u> 4. <u>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.</u> 	
<p>제 4조(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인성, 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 교육부에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 2학년중에 선발한다. <개정 2008. 12. 5.></p> <p>②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명과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명이 다를 경우 교과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” 를 통해 정한다.</p> <p>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지정한 기본</p>	<p>제 4조(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) <좌 동></p> <p>② <삭제 2021. 7. 16.></p>	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<p>이수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5.></p>		
	<p><u>제6조의 2(기본이수과목의 이수)</u> <u>①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명과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명이 다르거나, 하나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할 경우 교과내용의 교수요목이 부합함을 증명하는 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”를 통해 정한다.</u> <u>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5.></u> <u><개정 2021. 7. 16.></u> <u>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분리한 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 단, 1개의 과목이 2개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.</u> <u><개정 2021. 7. 16.></u> <u>③ 교원양성학과 담당교수는 교직필수교과목의 경우 기본이수교과목의 교수요목이 부합하도록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<개정 2021. 7. 16.></u></p>	
<p>제7조(교육실습)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실습지도교수 지도비는 학생에게 부담할 수 있다.</p>	<p><u>제7조(교육실습) ①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 이론교육(사전교육 등)을 이수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. 단, 천재지변, 감염병 등의 상황시,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총장 또는 실습협력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.</u> <u><개정 2021. 7. 16.></u> <u>②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, 학교현장실습 기간은 공휴일(개교기념일 포함)과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(초과시,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) 다만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</u> <u><개정 2021. 7. 16.></u></p>	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	<p>③ 학교현장실습은 한 학기에 집중하지 않고, 학기 또는 학년 별 분산 실시, 학생별 강좌가 없는 요일 활용 실시, 현장교사와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개정 2021. 7. 16.></p>	
	<p>제7조의 2(교육실습 지도비)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실습지도교수 지도비는 학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조개정 2021. 7. 16.></p>	
<p>제 8조(성적)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무시험검정 성적기준은 「별표1」과 같다. <개정 2008. 12. 5.><개정 2013. 3. 1.></p>	<p>제 8조(성적) ① <좌 동></p> <p>② 평균성적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을 별도로 산출하되, 복수·부전공 무시험검정의 경우 면제받은 과목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 7. 16.></p>	
	<p>제8조의 4(성인지교육)</p> <p>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교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 2021. 7. 16.></p> <p>1.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: 2회 이상 - 사범계열 : 4회 이상 <p>2. 2021. 2. 9. 기준 2개학기 초과 재학생 : 2회 이상</p> <p>②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기준은 성인지 교육 주요내용 4가지 항목(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)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21. 7. 16.></p>	
	<p>제8조의5(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)</p> <p>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 2021. 7. 16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졸업여부(졸업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) 2. 학위등록 여부 3.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여부(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) 4. 성적기준 충족여부 5.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여부 	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	<p>6. <u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기준 충족 여부</u></p> <p>7. <u>성인지 교육 실시 기준 충족여부</u></p> <p>8. <u>각종면허증(보건교사, 영양교사) 및 자격증 취득여부</u></p>	
	<p>제8조의6(교원자격검정 서류 편철) <u>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편철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</u> <u><신설 2021. 7. 16.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</u> 2. <u>학적부 사본</u> 3. <u>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관련서류</u> 4. <u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관련서류</u> 5. <u>성인지교육 이수관련 서류</u> 6. <u>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</u> 7. <u>자격증 사본(간호사면허증, 영양사면허증)</u> 	
	<p>제8조의 7(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)</p> <p>① <u>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에 대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 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(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, 성범죄 이력관련 서류)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각 호와 같이 확인해야 한다.</u> <u><신설 2021. 7. 16.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성범죄이력관련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7. 16.></u> 2. <u>중독여부관련 : 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,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</u> <u><신설 2021. 7. 16.></u> <p>② <u>제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</u> <u><신설 2021. 7. 16.></u></p> <p>③ <u>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 따로 정한다.<신설 2021. 7. 16.></u></p>	
	<p>제8조의 8(교원자격 포기자 학위취득) <u>예비교원이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자격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 교육 실습 교과목</u></p>	

현 행	개 정 (안)	비고
	<p><u>등을 포함하여 교직이수 교과목 대신 학칙 51조에 의거 졸업 이수요건이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.<신설 2021. 7. 16.></u></p>	
<p>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두며, 교원양성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08. 12. 5.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되 당연직으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며, 교직과정센터장은 부위원장이 된다.<2008. 12. 5.> <개정2012. 8. 1.> <개정2016. 3. 1.></p> <p>③ 위원은 <u>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중 1명은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08. 12. 5.></u></p>	<p>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<좌 동></p> <p>②<좌 동></p> <p>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위원중 외부인사 및 졸업생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08. 12. 5.> <개정 2021. 7. 16.>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</p> <p>1.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2. 제8조의 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/p> <p>3. 제8조의 5의 개정 규정은 2021년6월23일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교원양성 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4. 이 규정 개정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

□ 자격종별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○ 2013~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5~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,재입학자 포함)

구 분		세 부 사 항
전공과목		○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-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이상 포함),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※ 교과교육영역 보건의사, 전문상담교사, 영양교사는 제외
교직 과목 (22학점 이상)	교직이론 영역	- 12학점(6과목 이상) 이상 · 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학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,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	교직소양	- 6학점(3과목 이상) ·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 이상) · 교직실무(2학점 이상) ·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(2학점 이상) 또는 생활지도 및 상담(2학점 이상)
	교육실습	- 4학점 이상 · 학교현장실습(2학점 이상, 4주) · 교육봉사활동(2학점 이상, 60시간 이상)
교직 적.인성검사 적격판정		- 2회 이상
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		- 2회 이상 ※ 단, 2016.3.1.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,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
성인지교육		- 일반대학 교육과 : 4회 이상 -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: 2회 이상 ※ 단, '21. 2. 9.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개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'21. 2. 9.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
성적기준		- 졸업전체 평균성적(전공과목 75점/100점 이상, 교직과목 80점/100점 이상)
기타		- 보건의사,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

○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(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

구 분	세 부 사 항	
전공과목	○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-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이상 포함),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,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단,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(기본교육과정 교과(군)* 7학점(3과목) 이상을 추가로 포함 ※ 교과교육영역 보건교사, 전문상담교사, 영양교사는 제외	
교직 과목 (22 학점 이상)	교직이론 영역	- 12학점(6과목 이상) 이상 · 교육학개론, 교육철학 및 교육사, 교육과정, 교육평가,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, 교육심리, 교육사회학,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, 생활지도,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
	교직소양	- 6학점(3과목 이상) · 특수교육학개론(2학점 이상) · 교직실무(2학점 이상) ·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(2학점 이상) 또는 생활지도 및 상담(2학점이상)
	교육실습	- 4학점 이상 · 학교현장실습(2학점 이상, 4주) · 교육봉사활동(2학점 이상, 60시간 이상)
교직 적·인성검사 적격판정	- 2회 이상	
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	- 2회 이상 ※ 단, 2016.3.1.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,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	
성인지교육	- 일반대학 교육과 : 4회 이상 -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: 2회 이상 ※ 단, '21. 2. 9.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개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'21. 2. 9.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	
성적기준	- 졸업전체 평균성적(전공과목 75점/100점 이상, 교직과목 80점/100점 이상)	
기타	- 보건교사,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	

【별표 2】

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

- 교육부고시 제2020-240호(2020. 10. 30.)

학과/전공	설치년 도	표시 과목	교육부 고시과목 및 분야	비고
유아교육과	1997	-	유아교육론, 유아교육과정, 영유아발달과교육, 유아언어교육, 유아사회교육, 유아과학교육, 유아수학교육, 유아미술교육, 유아음악교육, 유아교사론, 유아동작교육, 유아놀이지도,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, 아동권리와 복지, 유아건강교육, 유아관찰 및실습, 부모교육, 유아안전교육	사범계
초등특수교육과	2003	-	<공통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> 특수교육학, 특수학교교육과정론, 장애학생통합교육론, 장애아진단및평가, 특수교육공학, 시각장애학생교육, 청각장애학생교육, 지적장애학생교육, 지체장애학생 교육, 중도.중복장애학생교육, 정서.행동장애학생교육, 자폐성장애학생교육,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, 학습장애학생교육, 건강장애학생교육	사범계 특수교육영역(공통)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할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
			초등윤리, 초등국어, 초등수학, 초등사회, 초등과학, 초등체육, 초등음악, 초등미술, 초등실과, 초등영어, 초등컴퓨터, 통합교과, 초등안전교육	
중등특수교육과	2005	-	<공통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> 특수교육학, 특수학교교육과정론, 장애학생통합교육론, 장애아진단및평가, 특수교육공학, 시각장애학생교육, 청각장애학생교육, 지적장애학생교육, 지체장애학생 교육, 중도.중복장애학생교육, 정서.행동장애학생교육, 자폐성장애학생교육,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, 학습장애학생교육, 건강장애학생교육	사범계
		미술	미술교육론, 현대미술론, 소묘, 색채학, 한국화, 서양화, 조소, 공예, 디자인, 판화, 표현기법, 서예, 영상(또는 애니메이션), 미술사(한국, 용양, 서양미술사 포함)	

학과/전공	설치 년도	표시 과목	고시과목 및 분야	비고
간호학과	1997	-	보건교육론, 간호관리학, 기본간호학, 상담이론과 실제, 기초건강과학, 건강사정및 실습, 학교보건 및 실습, 아동간호학및실습, 성인간호학및 실습, 정신간호학 및 실습,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, 응급 간호학및실습, 모성간호학및실습	학교보건 및 실 습과목에 학교안 전교육관련 내용 이 포함되도록 할것
미용과학과	1999	미용	미용교육론, 미용학개론, 피부미용, 헤어미용, 네일미용, 화장품학, 메이크업, 공중보건학, 해부학(또는 생리학해부학), 소독 및 전염병학 (또는 위생학)	
상담심리학과	2006	-	심리학개론, 심리검사, 성격심리학, 특수아상담, 집단상담, 가족상담, 진로상담, 상담이론과 실제, 심리치료(또는 임상심리학), 아동심리학, 청소년 심리, 상담실습, 직업교육론, 직업정보, 진로지도, 학습심리학, 이상심리학	
식품영양학과	2006	-	(1) 영양교육및 상담실습 (2) 영양학, 생애주기 영양학 (3) 단체급식및실습, 식품위생학 (4) 영양판정 및 실습, 식사요법 및 실습 (5) 식품학, 조리원리 및실습	(1)에서 1과목, (2)(3)에서 각 2과목 이상 (4)(5)에서 각 1 과목 이상